

숙박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법인A에서 호텔 숙박권을 고객에게 기부 이벤트 목적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숙박권 대금을 지급후 호텔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습니다. 숙박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라면 관련 법 조항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A 상품권(숙박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현금대용증권이므로 숙박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귀사는 실제 숙박권이 사용되어 숙박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숙박권을 구매시 법정증빙을 받고자 한다면 법인카드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교육세 및 부가세 관련 문의

Q 회사는 현재 표준산업분류 66199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671201(금융 및 보험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속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상태인데, 만약 과세당국에서 면세 사업자 처리 후 '교육세' 납부로 바뀌게 된다면 세액납부의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다른 세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가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귀사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특별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Q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분할하기는 하였으나, 판매처 중 온라인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할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역)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

1.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2.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 1) 매출 :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 2) 매입 :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A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Q 회사 노동조합에(노동조합계좌번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업무추진비(접대비)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 그리고 별도 증빙은 없는데 상관없을지요?

A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가 별도 영리조직 아니고 회사 내 조직의 일부이니 적격증빙 불필요(1년 사용내역서 등 첨부)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Q 1. 외상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 증빙없이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019년 이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지요?
2. 해외외상채권도 대손 가능한가요?

A 1. 외상채권도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리하게 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회수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채권도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